

2020. 4. 29.(수) 10:30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3층)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

회 의 자 료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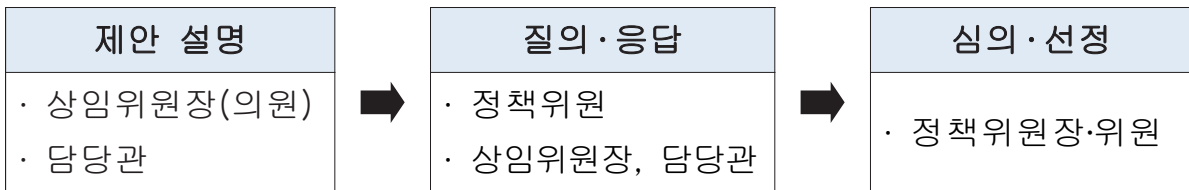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회의 개요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4. 29.(수) 10:3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3층)
- 참 석 자 : 35여명
 - 정책위원 20, 상임위 위원장 5, 의회사무처장, 담당관, 상임위 수석 등 10
- 안 건 :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선정(6건)

II 심의 진행흐름

- 심의방식 : 각 건에 대하여 개별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후 일괄 심의·선정



- ⇒ 제안과제 6건 중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비 확보 예산 9천만원 범위 내 심의·선정

III 시간 계획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0:30~10:32	2분	○ 개회 및 국민의례	입법정책 담 당 관
10:32~10:35	3분	○ 인사말씀	위 원 장
10:35~11:55	80분	○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11:55~12:00	5분	○ 폐회 및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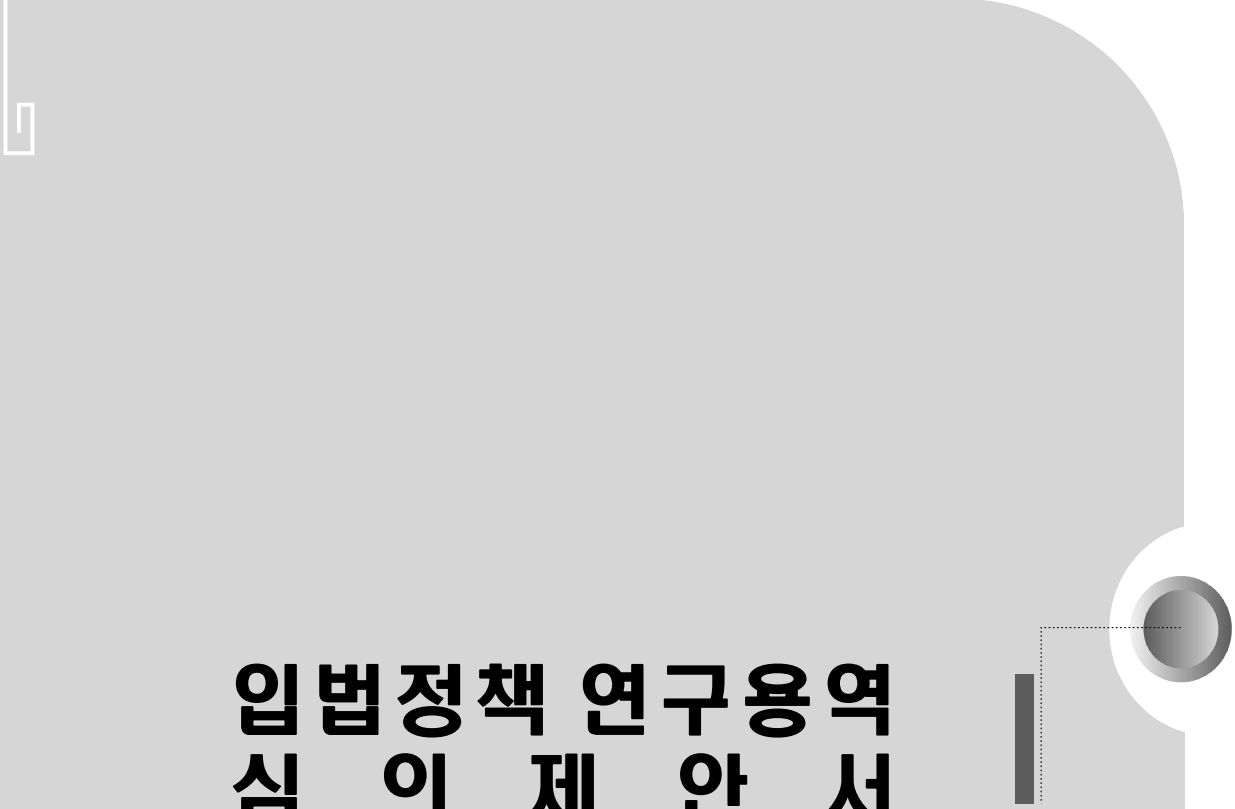
순서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 제안서 1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심의.제안서 3

1. 관내 대학 연구활동 지원의 지역 환류를 위한 체계 조성 5
2.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15
3.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도개선 및 교육 연구 23
4. 가로림만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등 해양생물 보호 방안 연구 .. 31
5. 충남형 방과 후 초등 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 연구 43
6.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연구 55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 의 제 안 서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제안서

I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3항 및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 2020년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심의·선정

II 입법정책 연구용역 관련 경과

-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2020. 1월)
-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계획 통보 및 과제 접수(2~3월)
- 제안과제에 대한 전문기관(충남연구원) 사전 검토(3월)

III 연구용역 제안과제 접수 현황

- 상임위 및 사무처 과제 제안 : 6건(소요예산액 130,816천원)

(단위 : 천원)

합계	행자위	문복위	농경환위	안건해소위	교육위	예산분석
130,816	19,540	30,740	22,000	18,000	20,732	19,804

IV 심의요청 내용

-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에서 제안한 과제 6건(소요예산액 130,316천원)중 2020년도 예산액 90,000천원 범위에서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으로 발주할 용역과제 선정

붙임 : 1.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제안(총괄) 1부.
2.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각 1부.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제안(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제안부서	용역명	사업비	용역기간
합 계		6건	130,816	
1	행정자치위원회	관내 대학 연구활동 지원의 지역 환류를 위한 체계 조성	19,540	4개월
2	문화복지위원회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30,740	6개월
3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제도개선 및 교육 연구	22,000	3개월
4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가로림만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등 해양생물 보호 방안 연구	18,000	6개월
5	교육위원회	충남형 방과 후 초등 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기초연구	20,732	6개월
6	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연구	19,804	3개월

1. 관내 대학 연구활동 지원의 지역 환류를 위한 체계 조성

행정자치위원회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관내 대학 연구활동 지원의 지역 환류를 위한 체계 조성
소 관 부 서	행정자치위원회
소 요 예 산	금 19,540천원
소 요 기 간	4개월 (※ 실제연구 소요기간)
연구 필요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관내 대학의 연구활동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와 연구의 내용이 충남의 산업 및 일자리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점검체계도 미약한 것이 현실임. ○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서로 협업하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구과제 선정과 진행, 연구결과의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
주 요 연구내용	○ 관내 대학에 예산이 지원되는 연구과제 현황 분석 - 정부부처별 및 도·시군의 관내 대학 연구과제 예산지원현황 등 ○ 연구과제 성과 분석 체계의 파악과 지방정부 차원의 DB화 - 연구과제 성과분석 체계 분석 - 도 예산지원으로 완료된 연구과제의 활용 및 관리 실태 등 ○ 연구결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환류 활성화 방안 - 연구결과의 도정 접목 활성화 및 원스톱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등
활용계획	○ 연구과제 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비 집행 ○ 연구과제 결과물의 체계적인 DB화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공유 및 활용 극대화 ○ 연구과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의 극대화 ○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간의 효율적인 정책연구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품질 제고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있 음 (○)
제 안 자	소속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성 명 : 이 공 휘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 가. 과업명 : 관내 대학 연구활동 지원의 지역 환류를 위한 체계 조성
-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다. 사업예산 : 금 19,540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그동안 충남도를 비롯한 관내 자치단체에서 대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충남도의 정책품질을 제고하여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해당 대학에 지원한 연구의 성과가 충남도의 산업발전 및 일자리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낮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는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해당 자치단체의 연구성과의 점검 체계가 미약한 것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나 지역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라기 보다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일반적·이론적 연구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서로 협업하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연구의 성과물을 적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연구의 진행 및 주요 성과물의 활용까지 연구진행의 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간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과제 성과 분석 체계와 연구결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환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나. 과업의 목적

- 충남도 내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과제 및 예산 현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대학별 의견조사를 통한 연구 성과 체계 구축

- 과거 연구가 완료된 과제의 활용 및 관리 실태와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반영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연구과제 성과 분석 체계의 DB 구축
- 연구성과를 정책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간의 협의체 구축방안 등의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

3. 과업의 내용

가. 충청남도 내 대학의 정부지원 연구과제 현황 분석

- 정부(부처별) 및 도, 시·군의 연구비 예산지원 현황
- 사업분야별 연구과제 선정과정 및 현황
- 관내 대학별 의견조사 및 반영현황

나. 연구과제 성과분석 체계 파악 및 지방정부 차원의 연구과제 DB 구축

- 과거 예산지원이 완료된 연구과제의 활용 및 관리실태
- 연구성과(결과)의 정책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우수사례 분석
- 향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연구결과물의 DB화

다. 연구결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환류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의 협의체 구축
- 연구결과의 도정점목 활성화 방안 및 연구과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4. 과업 수행시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충청남도의 제반 규정에 의해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과업범위와 연계하여 과업

수행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충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비용 증감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 수행에 대한 조사·분석 및 예측은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위해 사용된 기술, 방법, 자료 등은 그 인용 문헌 또는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결산분석은 과업의 범위 또는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효율적인 방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이 사업의 결과물은 향후 충남도 재정운영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내실있는 연구가 되도록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투입,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이 사업수행 결과 성과에 대한 제반 권리는 충남도에 귀속하며, 승인 없이 활용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는 충남도의 의견에 따른다.

나.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고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만약 정보 유출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고객정보를 책임 관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FILE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참여 인력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수행 중에 알게 된 모든 정보(자료)와 조사결과에 따른 제반 권리는 충남도에 속하여 외부(언론기관 등)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성과보고 및 성과품 납품

가. 과업 수행 보고 및 협의

- 착수보고는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및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 보고

- 중간 보고(협의) : 계약만료 45일 전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보고

다. 최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최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계약만료 7일 전 용역결과를 종합 보고

산출내역서

- 용역명 : 관내 대학 연구활동 지원의 지역환류를 위한 체계 조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원	1	3,875,676	19.8	책임연구원
		연구원	원	1	2,971,816	15.2	1×(3,229,730×2)×15%×4
		연구보조원	원	2	3,973,118	20.3	연구원 1×(2,476,514×2)×15%×4
		보조원					연구보조원 2×(1,655,466×2)×15%×4
		노무비계	원	4	10,820,610	55.4	
	② 경 비	여비			1,700,000	8.7	45,000×4인×5회(관외) 20,000×4인×10회(관내)
		유인물비			2,500,000	12.8	착수보고회(20부):10,000×20부 중간보고회(20부):10,000×20부 최종보고회(50부):10,000×50부 결과보고서(80부):30,000×80부
		전산처리비			1,200,000	6.1	설문조사 통계분석 (300,000×4개월)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1,550,000	7.9	자문비 15만원×5명×1회=75만원 회의비 2만원×4명×10회=80만원
		교통통신비					
		조사비			1,000,000	5.1	설문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비용
		경비계	원		7,950,000	40.7	
	③ 순 용역원가(①+②)		원		18,770,610	96.1	
	④ 일 반 관 리 비 (③의 6% 이내)		4.1%		769,595	3.9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 + ④ + ⑤)				19,540,205	100.0	
	⑦ 부 가 가 치 세 (⑥ 의 10%)		%		0		부가세 면제기관
	총 용역비		원		19,540,000	100	만원이하절삭

「연구용역 과제 자문 의견서」

〈과제명〉

관내 대학 연구활동 지원의 지역 환류를 위한 체계 조성

(검 토 자 : 충남연구원 이흥택)

□ 검토의견

연번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①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대학이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결과물의 파급효과는 사실상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임. 특히 연구과제의 발굴과 선정, 추진방식, 연구결과의 활용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관련 연구의 존재여부조차 확인할 수가 없음. 이로 인해 사실상 대학의 연구가 형식화되고 지역과 괴리되는 결과를 초래. ○ 따라서 도내 대학에 지원되는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DB화와 이러한 연구과제의 발굴·선정→연구수행→성과활용의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과제의 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도내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좋은 주제의 연구라 할 수 있음.
②	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연구용역은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필요에 따라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검토 필요) ○ 도내 대학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긴요한 만큼 도, 의회, 대학, 연구기관의 적극적 협의과정이 필요
③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이 연구를 통해 도내 대학의 연구지원사업을 DB화하여, 도민들에게 통합제공이 가능 ○ 또한 각 대학별로 연구지원사업의 수행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예산지원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 ○ 대학 연구지원사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지역사회 환류촉진 기반마련

④	용역비의 적정성	○ 도내 대학의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심층 조사(설문, 인터뷰), 관계자 워크숍 등을 고려했을 때 1954만원으로는 불가능함. 이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인터뷰와 회의 몇 번만 개최할 수 있는 예산임. 도내 국립, 사립, 전문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회의를 고려했을 때 최소 4천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
⑤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 사항 (최근 5년)	○ 도내 대학의 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임(prism, 충남연구원 등 참조)
⑥	산출내역의 적정성	○ 연구용역 예산에 비해 유인물비가 과다(150만원 수준) ○ 조사비를 100만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온라인 설문조사 시 유의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온라인으로 응답시 무성의한 설문결과가 많으면 활용이 불가능함. 따라서 도내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방문형 조사 방식의 예산 편성이 필요
⑦	실무차원의 시행 가능한 용역과제 여부	○ 시행 가능함
⑧	장기용역사업(1년이상)으로 사업시기 적성함이 낮은 용역 여부	○ 4개월 과제인 만큼, 연말 도 예산 편성 반영이 가능
⑨	기타 연구실익 여부	

□ 그 외 동 과제 추진을 위한 제반의견

- 이 연구는 도내 대학에 투입되는 연구지원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인만큼, 가급적 도내 대학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실제 대학에서 연구지원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결과가 도민들에게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
- 도내 대학의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환류와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필요

2. 충청남도 노인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문화복지위원회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소 관 부 서	문화복지위원회
소 요 예 산	금30,740천원
소 요 기 간	○ 6개월
연구 필요성	○ 중앙정부 노인돌봄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별 수요공급 분석 필요 ○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충남형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시
주요 연구 내용	○ 커뮤니티케어 정책 국내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 분석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분석 ○ 읍·면·동 별 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
활 용 계 획	○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한 해결방안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 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따른 시·군, 읍·면·동 및 수행기관의 효율적인 역할 제언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있 음 ()
제 안 자	소속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성명 : 김 연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 가. 과업명 :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다. 사업예산 : 금30,740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가. 중앙정부의 노인돌봄정책 변화에 따른 충남도 지역별 수요·공급분석
 - 커뮤니티케어 정책 시행에 따라 사람 중심 돌봄(person-centered care)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노인대상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시설유형별 서비스, 제공인력, 수요자 규모 등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 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실시에 따른 세부 정책 마련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의 통합·개편되면서 지자체의 책임 강화
 - *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⑤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지역사회자원연계
 -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역별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행정역할이 요구됨
- 다.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증가 추세이나 시군별 시설 및 복지 인프라 차이가 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 야기
 - 장기요양보험, 활동보조사업 등 제도권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접근 필요
- 라.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제시
 - 시도별 복지욕구 대비 서비스 공급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충남도의 종합적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충남도 특성화 정책방향 제시

3. 과업의 내용

가. 노인돌봄 및 커뮤니티 케어 관련 정책 파악을 위한 문헌자료 조사

○ 중앙정부 정책 현황 조사

- 커뮤니티케어 정책 국내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 분석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 지역별 자원분포 및 서비스 공급 현황 파악의 중요성,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 방안, 서비스 제공기관 및 케어매니저 등 각 주체별 역할 등

나.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및 욕구 분석

○ 충청남도 내 노인현황 및 고령화 실태 파악(통계청 인구총조사, 도 행정자료 활용)

- 15개 시·군, 207개 읍·면·동 별 노인인구, 고령화, 장기요양 규모 등

○ 지역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요규모 및 욕구분석(설문조사)

다.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및 시설현황 분석

○ 충청남도의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현황(도 행정자료 활용)

- 시군별 주거, 의료, 재가노인복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종합복지관

○ 지역 간 비교·분석

- 지역별 공식서비스 공급 현황 및 비공식 돌봄 실태(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등 2차 자료 분석)

라. 면접조사 및 간담회 실시

○ 시군 노인돌봄서비스 담당자 및 전문가 FGI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노인 대상 심층면담

- 시군별 노인인구 및 도시·농촌 지역 특성 반영 대상 지역 선정(8개 지역)
- 장기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 노인(20여명)
- 공적 돌봄 이용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 및 비공식적 돌봄 서비스 내용
- 질문지 구성(안)

구 분	문 항
일반적인 사항	· 성별, 나이, 가족/이웃/동료 관계, 건강상태, 주거/근린생활환경 등
돌봄 관련 사항	· 공식 돌봄 서비스 내용(이용 기간 및 빈도, 돌봄 만족도 등) · 가족/이웃/동료 등 사회적 관계 정도 ·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 유무 및 유형, 서비스 내용 및 빈도 · 돌봄 관련 공식/비공식적 서비스 욕구

마. 자문회의 및 간담회

-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단체, 학계 등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방향 및 비전,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
- 실무전문가 자문회의

마. 분석결과 및 정책제언 제시

- 지역 별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규모 및 구체적인 욕구에 대한 분석결과
 -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한 해결방안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 지역 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공급량 진단, 공급 과부족에 대한 정보제공
 - 향후 공급 계획 및 추가자원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보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예방서비스의 제공 방안
- ‘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따른 시군, 읍면동 및 수행기관의 효율적인 역할 제언

산 출 내 역 서

○ 용역명 : 충남 노인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명	1	3,488,110	11.35%	(3,229,730원*2)*1명*6개월*9%
		연구원	명	1	3,566,180	11.60%	(2,476,514원*2)*1명*6개월*12%
		연구보조원	명	1	5,562,370	18.10%	(1,655,466원*2)*1명*6개월*28%
		인건비계		3	24,737,471	53.45%	
	② 경 비	여비	원	3	1,700,000	5.53%	60,000원*1명*1일*10회 55,000원*2인*1일*10회
		유인물비	원	4	2,110,000	6.86%	착수보고자료 : 3,000원*1매*30부 중간보고회 : 7,000원*1매*30부 최종보고회 : 7,000원*1매*30부 보고서 : 20,000원*1매*80부
		전산처리비	원	1	5,750,000	18.71%	설문조사 : 23,000원*1매*250부
		연구용 재료비	원	1	150,000	0.49%	소모품비 (토너, 용지, 사무용품 등)
		회의비	원	3	1,640,000	5.34%	자문회의 150,000원*2인*2회 간담회50,000원*4인*2회 회의경비20,000원*8인*4회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경비계			11,350,000	24.52%	
	③ 순 용역원가(①+②)				36,087,471	77.97%	
	④ 일 반 관 리 비 (③ 의 6 % 이 내)		%		1,438,000	4.68%	
	⑤ 이 윤 (③ + ④ 의 10%이내)		%		2,540,470	8.26%	
	⑥ 총 용 역 원 가 (③ + ④ + ⑤)		원		27,945,130	90.91%	
	⑦ 부 가 가 치 세 (⑥ 의 10 %)		%		2,794,510	9.09%	
	총 용 역 비				30,739,640	100.00%	

「연구용역 과제 자문 의견서」

<과제명>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	-----------------------

(검 토 자 : 충남연구원 김용현)

□ 검토의견

연번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①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노인돌봄사업이 통합적 제공으로 변경된 만큼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②	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수의계약이 적절함)
③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경된 시점에서 본 연구용역의 결과도 출은 매우 유의미 할 것이라고 사료됨
④	용역비의 적정성	본 연구의 과업지시서상의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포함한 내용적 영역의 방대함으로 미루어볼 때 금30,740천원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됨
⑤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 사항 (최근 5년)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 사항 없음
⑥	산출내역의 적정성	설문조사의 책정부수가 250부로 되어있는바 충청남도 전역이 지역적 연구대상으로 볼 때 적정한지 의문시 됨
⑦	실무차원의 시행 가능한 용역과제 여부	과업내용에 맞는 현실적인 연구용역비 산정이 필요
⑧	장기용역사업(1년이상)으로 사업시기 적성함이 낮은 용역 여부	본 연구용역의 과업내용으로 볼 때 1년 이상의 용역사업은 아님
⑨	기타 연구실익 여부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이 얼마나 노인돌봄 현장의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연구임

□ 그 외 동 과제 추진을 위한 제반의견

○ 본 연구의 과업내용이 방만함

- 과업지시서상에 의하면 설문조사, 면접조사,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수행해야 함
-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고려할 때 상기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현실성 있는 과업내용 조정이 요구됨

3.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도개선 및 교육 연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제도개선 및 교육 연구용역
소 관 부 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 요 예 산	금22,000,000원
소 요 기 간	3 개월
연구 필요성	○ 충청남도지사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공공위탁과 관련하여, 법령 불부합 조례를 발굴·검토 ○ 법령 불부합 조례, 자치입법 미비 조례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기능 강화 및 연구·공부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 ○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치행정의 완성을 기함
주 요 연구내용	○ 현행 위탁 관련 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 조례의 기술적 측면 검토 ○ 조례 제정과 개정을 요하는 경우에 정비 방안 제시
활용계획	○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의 합리적 정비방향 제시 ○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 관련 개별 조례 개정안의 정비 방안 제시 ○ 충청도의회 의원 발의로 충청남도 자치입법 구현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있 음 ()
제 안 자	소속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성 명 : 김 득 응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 가. 과업명 :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제도개선 및 교육 연구용역
-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다. 사업예산 : 금22,000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가. 충청남도지사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공공위탁과 관련하여, 법령 불부합 조례를 발굴·검토
- 나. 법령 불부합 조례, 자치입법 미비 조례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기능 강화 및 연구·공부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
- 다.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치행정의 완성을 기함

3. 과업의 내용

- 가. 위탁제도의 이해를 위한 3회(10시간)에 걸친 의원 심화교육 실시
- 나.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의견 수렴(필요 시 세미나·토론회 개최)
- 다. 현행 위탁 관련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 현행 위탁 관련조례에 대하여 분야별, 유형별로 심층적 분석과 검토로 문제점, 미비점, 보완점을 다각도로 도출하고 정비 방향 제시
 - 최근에 개정된 각종 위임법령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한 정비 방향 제시
- 라. 조례의 기술적 측면 검토
 - 법령에 근거한 위탁 관련 조례의 부합성 여부
 - 조례의 적합성, 체계성, 명확성 확보 여부
 - 실효성이 부족하고 사문화된 규정의 정비를 위한 적절한 대안의 제시
- 마. 조례 제정과 개정을 요하는 정비 방안 제시
 - 위탁 관련조례의 전반적인 스크린 과정을 통해 법령 적합성 여부와 위탁 대상사무를 구분하고,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된 위탁 조례는 정비 방안 제시

산 출 내 역 서

- 용역명 :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 관련된 조례 제도개선 및 교육 연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명	1	9,689,190	48%	세부내역서 참조
		연구원	명	1	7,429,542	37%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계			17,118,732	85%	
	② 경 비	여비	회	7	300,000	2%	세부내역서 참조
		유인물비	부	50	1,520,000	3%	
		전산처리비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건	3	150,000	2%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경비계			1,970,000	10%	
	③ 순 용역원가(①+②)				19,088,732		
	④ 일 반 관 리 비 (③ 의 6 % 이 내)		5%		954,437	5%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⑥ 총 용 역 원 가 (③ + ④ + ⑤)				20,000,000		(만 단위 이하 절삭)
	⑦ 부 가 가 치 세 (⑥ 의 10 %)		10%		2,000,000		
	총 용 역 비				22,000,000		

■ 세부내역서

① 인건비(17,118,732원)

가. 책임연구원 : $(3,229,730\text{원} \times 2) \times 50\% \times 1\text{명} \times 3\text{개월} = 9,689,190\text{원}$

나. 연구원 : $(2,476,514\text{원} \times 2) \times 50\% \times 1\text{명} \times 3\text{개월} = 7,429,542\text{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 <개정 2020.01.02.>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원	월 2,476,514원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임

② 경비(1,950,000원)

가. 여비(300,000원)

■ 책임연구원 : $45,000\text{원} \times 1\text{명} \times 4\text{회} = 180,000\text{원}$

■ 연구원 : $40,000\text{원} \times 1\text{명} \times 3\text{회} = 120,000\text{원}$

□ 작성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구 분	등 급	일비(원)	식비(원)	숙박비(원)
책임연구원	제1호등급	20,000	25,000	실비(상한액 : 특별시 및 광역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연구원	제2호등급	20,000	20,000	

나. 유인물비(1,520,000원)

■ 착수 보고서 : $7,000\text{원} \times 30\text{부} = 210,000\text{원}$

■ 중간 보고서 : $7,000\text{원} \times 30\text{부} = 210,000\text{원}$

■ 최종 보고서 : $10,000\text{원} \times 30\text{부} = 300,000\text{원}$

■ 결과 보고서 : $10,000\text{원} \times 80\text{부} = 800,000\text{원}$

다. 회의비(150,000원)

■ 업무회의 : $50,000\text{원} \times 1\text{회} \times 3\text{개월} = 150,000\text{원}$

「연구용역 과제 자문 의견서」

〈과제명〉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제도개선 및 교육 연구용역

(검 토 자 : 충남연구원 김진영)

□ 검토의견

연번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건
①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는 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 높음 “과업의 내용” 중 “3회(10시간)에 걸친 의원 심화교육 실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지 미지수임
②	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적절
③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조례에 대한 정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 높음
④	용역비의 적정성	용역비에 비하여 예상되는 과업의 양이 다소 많음
⑤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 사항 (최근 5년)	“충청남도 민간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 용역발주부서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연도 : 2018년 7월
⑥	산출내역의 적정성	- 경비 관련하여 “3. 과업의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내용 불일치 - 과업의 내용에 기술된 3회의 심화교육,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토론회 개최를 위한 산출내역 미반영 1회당 회의비 과소산출 - 전문가의 의견수렴 위한(세미나·토론회 개최시) 자문수당 미책정
⑦	실무차원의 시행 가능한 용역과제 여부	- 연구의 범위에 대한 설정이 미흡함 - 충남도가 수행하는 모든 위탁사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한 검토인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에 대한 검토인지 - 전자의 경우, 연구의 의의 및 실무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과업의 양이 부담될 수 있음
⑧	장기용역사업(1년이상)으로 사업시기 적성함이 낮은 용역 여부	

⑨	기타 연구실익 여부	◦ 조례 개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 기대
---	------------	-----------------------

□ 그 외 동 과제 추진을 위한 제반의견

○ 과제 범위의 명확한 설정 필요

- 충남도가 수행하는 모든 위탁사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한 검토인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인지
- 본 자문 의견서는 “충남도가 수행하는 모든 위탁사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한 검토”의 경우에 대한 의견임

4. 가로림만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 등 해양생물 보호 방안 연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가로림만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등 해양생물 보호 방안 연구
소 관 부 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 요 예 산	금18,000,0000원
소 요 기 간	6개월
연구 필요성	○ 천혜의 자연 환경과 갯벌을 보유한 가로림만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이 관찰되는 곳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 생물보호구역임. ○ 하지만 가로림만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특별보호가 필요한 해양 생물의 선정과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한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보호 방안의 연구는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가로림만의 생태계 보전과 활력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가로림만이 해양생물의 보고로 지속되고, 지역공동체와의 상생 공간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함.
주 요 연구내용	○ 가로림만의 특별보호 필요 해양생물 및 천연기념물 현황과 보호 실태 ○ 가로림만의 특별보호 필요 해양생물 및 천연기념물 보호 방안 ○ 가로림만의 특별보호 필요 해양생물 및 천연기념물 활용 방안
활용계획	○ 정책 제언 및 조례 제정 시 자료로 활용 ○ 5분 발언,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있 음 ()
제 안 자	소속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성 명 : 장승재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 가. 과업명 : 가로림만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등 해양생물 보호 방안 연구
-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다. 사업예산 : 금18,000,000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가. 가로림만은 2014년 조력발전 계획이 취소되고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풍부한 수산자원과 건강한 갯벌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나. 특히 가로림만에서 관찰되고 있는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된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가로림만의 생태계가 국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대표 해양생물임.
- 다. 이에 가로림만의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을 포함한 특별보호 필요 해양생물의 선정 및 해양생물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식, 개체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보호 방안을 연구하여 가로림만의 건강한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 가. 가로림만 서식 천연기념물 포함 특별보호 필요 해양생물 현황 및 보호 실태
 - 가로림만 서식 해양생물 중 특별보호 필요 대상 선정 및 선정 이유와 기준, 개체 특성(개체 수, 분포, 이동경로 등) 현황 조사
 - 가로림만 서식 해양생물 보호 활동 개인 및 단체 등 현황과 활동 실적, 보호 활동 관련 예산 등 지원 현황 조사
 - 국내외 해양생물 보호시설의 점박이물범 등 관련 연구 사례 조사
- 나. 가로림만 서식 천연기념물 포함 특별보호 필요 해양생물 보호 방안
 - 해양생물별 지역별(번식·서식·도래지 등) 구분, 생존 실태(먹이, 번식, 휴식처, 천적 등) 조사
 - 해양생물별 보호를 위한 생존 지원 방안 작성

- 다. 가로림만 서식 천연기념물 포함 특별보호 필요 해양생물 활용 방안
 - 해양생물을 활용한 가로림만 홍보 발전 방안 작성
 - 해양생물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 작성

4.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가. 과업의 수행

- 본 과업지시서는 연구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관련 지침 등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참여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연구 경험의 공유 및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전문지식, 경험을 전수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비용 증감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관련 일반사항

-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과업의 성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충청남도의회에 있으며 발주처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보고서(성과품) 제출

가. 작성기준

-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 후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 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그 내용상의 미비 및 오류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보고서) 제출목록

성 과 품(보고서)명	수 량 (부)	제출목적	제출시기
•착수계(착수보고서)	50	승인용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서	50	보고용	중간보고회(1회)/협의
•최종보고서 - 조사자료 및 작업관련 자료 (USB, 작업원본 등) - 최종보고서(요약분, USB, File)	각 1식 100	보고 및 배부용	계약만료일 이전

6. 용역수행 세부지침

- 본 지침은 용역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본 용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용역의 수행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용역책임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만료 45일 전에 중간보고회를, 계약만료 14일 전에 그간의 과업수행내용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때 제시된 의견을 용역수행 및 성과품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 작성 서식 등은 발주처와 상의한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자문위원회 구성·간담회 등 개최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간담회 등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 과업 수행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우리 의회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기타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자료는 타 기관의 통계자료나 사업계획을 사용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료의 출처를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계약관련 일반 사항

-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추가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기관의 의견이나, 과업 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역 기간 등 경미한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이 용역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 및 판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동 성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다. 과업수행자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최선의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기술적인 내용 등은 타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와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발주처"에 대한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 "과업수행자"의 직원이 본 과업수행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 의무 이행이 지연 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는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및 관계자료(자문내용 등 포함) 등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 등이 대민 조사 활동 시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인원이 과업수행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여인원을 보완하여야 하며,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 용역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마.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본 용역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범위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 4.)에 의한다.

7. 추진일정표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세부내용 \ 기 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가. 착수보고회								
나. 과업 수행 (현황조사, 현지조사 등)								
다. 중간보고회								
라.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가로림만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등 해양생물 보호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금액 단위 : 원)

항 목			단위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수량	금 액		
순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명	1	$1 \times 3,229,730 \times 0.12(12\%) \times 2 \times 6\text{월} = 4,650,810$	25.8%	
		연구원	명	1	$1 \times 2,476,514 \times 0.13(13\%) \times 2 \times 6\text{월} = 3,863,360$	21.5%	
		연구보조원					
		보조원	명	1	$1 \times 1,241,642 \times 0.19(19\%) \times 2 \times 6\text{월} = 2,830,940$	15.7%	
		노무비계			11,345,110	63.0%	
용 역 원 가	② 경 비	여비	명	3	1,410,000	7.8%	55,000×1인×6회=33만원 45,000×2인×12회=108만원
		유인물비	부	200	$200 \times 5,000 = 1,000,000$	5.6%	
		전산처리비			208,520	1.2%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2,400,000	13.3%	자문비 15만원×6명×2회=180만원 회의비 5만×6명×2회=60만원
		교통통신비					
		조사비					
		경비계			5,018,520	27.9%	
③ 순 용역원가(①+②)					16,363,630	90.9%	
④ 일 반 관 리 비 (③ 의 6 % 이 내)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⑥ 총 용역원가 (③ + ④ + ⑤)					16,363,630	90.9%	
⑦ 부 가 가 치 세 (⑥ 의 10 %)			%		1,636,370	9.1%	
총 용 역 비					18,000,000	100%	

「연구용역 과제 자문 의견서」

〈과제명〉 가로림만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등 해양생물 보호 방안 연구

(검 토 자 : 충남연구원 정옥식)

□ 검토의견

연번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①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물범의 경우 가로림만, 나아가 충남의 자연자산이므로 보전관리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은 필요하다 여겨짐
②	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③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 현황을 토대로 향후 보전관리 사업의 방향 제시 등 활용 가능성은 높음
④	용역비의 적정성	- 과업 내용 중 현장 연구를 통한 서식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용역비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⑤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 사항 (최근 5년)	- 기존 연구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연구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임
⑥	산출내역의 적정성	-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조사 인력 투입과 많은 현장 방문을 위해서는 여비 증액과 더불어 보다 많은 자문료(현장 자문 등) 책정이 요구됨
⑦	실무차원의 시행 가능한 용역과제 여부	- 실무차원의 시행가능한 용역임
⑧	장기용역사업(1년이상)으로 사업시기 적성함이 낮은 용역 여부	- 본 과업 내용상 1년 용역으로 수행이 가능하지만 1회성 연구가 아닌 모니터링 성격의 장기 과제 발주도 필요함
⑨	기타 연구실익 여부	

□ 그 외 동 과제 추진을 위한 제반의견

○ 물범에 대한 기초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가로림만 물범의 서식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문헌 고찰과 더불어 가로림만 서식종의 보전 관리를 위해 진행해야 할 연구와 사업, 그리고 향후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도출하는 데 집중했으면 함

5. 충남형 방과 후 초등 돌봄 통합체계구축 방안 기초연구

교 육 위 원 회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구축 방안 기초연구
소 관 부 서	교육위원회
소 요 예 산	금20,732,000원
소 요 기 간	6개월
연구 필요성	○ 지역(시·군, 읍·면·동)별 초등돌봄 인프라의 양극화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충청남도과 충청남도교육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지원청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시·군,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선진형 초등돌봄 통합체계구축 방안 필요
주 요 연구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충남도내 지역(시·군, 읍·면·동)별 초등돌봄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현행 초등돌봄체계의 문제점 분석 ○ 지역(시·군, 읍·면·동)별 초등돌봄서비스 유형별 공급현황 및 수요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 타·시도 및 해외의 선진형 초등 돌봄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검토 ○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시·군,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한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관련 정책과제 제안
활용계획	○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시 연계 활용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 유사용역 없음
제 안 자	소속 : 교육위원회 위원장 성 명 : 오인철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 가. 과업명 :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구축 방안 기초연구
-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다. 사업예산 : 금20,732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가.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지역(시·군, 읍·면·동)별 인프라 차이로 인한 초등돌봄의 양극화 및 사각지대 발생
- 나. 지방자치단체, 학교-교육청, 지역사회(사회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읍·면·동)별 맞춤형 초등돌봄 서비스 마련
- 다. (기초)지방자치단체-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별(시·군, 읍·면·동)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 정책 방향 제시

3. 과업의 내용

- 가. 초등돌봄 공급 현황 파악
 - 현행 초등돌봄 관련 실태 파악
 - 지역(시·군, 읍·면·동)별 초등돌봄 현황 및 마을단위 초등대상 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돌봄기관, 교육내용, 교실 등 공간 확보, 운영방법, 협의체 등)
 - 도내 초등학교 돌봄 현황 파악 및 돌봄지원 관련 네트워크 현황 분석, 돌봄서비스 기관(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과 유관기관과(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 및 협의체 등 운영방식 분석
 - 지방자치단체(지역아동센터 등)와 교육청(초등돌봄교실 등)의 초등돌봄 공급 현황 파악
 - 초등돌봄 지원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교육지원청)간의 네트워크 현황분석

○ 현행 초등돌봄 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지역(시·군, 읍·면·동)별 초등돌봄 참여현황, 운영시간 및 가구유형별 현황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 분석
- 서비스 공급현황 및 지역별 격차파악(읍·면·동별 서비스유형별 공급현황 및 공급율 산출에 의한 격차 파악)

나. 초등돌봄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초등돌봄 수요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별 사각지대 파악

- 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서비스유형별 수요분석 등 지역별 차별화된 수요파악(맞벌이 여부 등 고려)

○ 조사대상 및 표본 수

- 충남 거주 초등학생 아동 및 보호자, 관련 종사자 등을 조사 대상으로 고려하되 표본은 읍·면·동별, 연령별, 돌봄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 수 결정
- 아동, 학부모, 돌봄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 고려

○ 조사방법 및 내용

- 가구별, 기관별, 대상별 방문 및 대면 조사 등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양적분석 기본 실시
- 지역, 환경 등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시·군,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조사 및 결과 도출
- 지역(시·군, 읍·면·동)별 초등돌봄기관 이용 실태 및 현황, 가정의 돌봄 수요 및 정책 요구사항, 돌봄 이용을 위한 필요사항 등 파악

다.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특성화 방안 마련

○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례 적용가능성 검토

- 타· 시도 초등돌봄사업 벤치마킹 적용 가능성 검토
- 해외 우수사례 검토

○ 지역별 인프라 차이를 극복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 방안 모색

- 지역(마을)돌봄, 기관을 통한 돌봄 등 서비스 유형별로 체계화 하여 지역(읍·면·동)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현황과 수요자 현황에 맞는 수요공급 관리를 시스템화할 수 방안 마련
- 지역유형별 초등돌봄 모형 개발 및 적용 모델 제시특성, 서비스운영 등

라. 정책적 시사점 및 합의 도출

-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
 - 지역(읍·면·동)별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충청남도과 도교육청간의 네트워킹 방안과 중·장·단기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정책과제) 제안
 - 지역(읍·면·동)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제공기관의 유형이나 운영방식, 내용 등에 대한 통합 및 조정 방향 제시
 - 지역(읍·면·동)별 초등돌봄 인프라 양극화 현상의 해소방안 또는 기존 인프라의 활용 극대화 방안 제시

4. 보고서(성과품) 제출

가. 작성기준

- 용역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그 내용상의 미비 및 오류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및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한 착수보고를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중간보고는 계약만료 45일 전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최종 보고회(정책위원회 심의)는 계약만료 14일전에 실시하고 최종 성과품은 최종보고회(정책위원회 심의) 후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종료일 7일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보고서) 제출목록

성 과 품(보고서)명	수 량 (부)	제출목적	제출시기
• 착수보고회 ⇒ 착수보고서 (착수계, 연구세부계획 보고)	25	보고용	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서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보고)	25	보고용	중간보고회 시 (계약만료 45일 전)
•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서	80	보고용	최종보고회 시 (계약만료 14일 전)
• 최종 성과품 ⇒ 최종보고회 의견 반영 - 책자 제출 - 파일 제출(USB)	책자 80 USB 1개	제출	최종성과품 (계약만료 7일전)

5. 용역수행 세부지침

가. 용역의 수행

- 과업수행자는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작하여 발주자에 계약 만료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착수계
 - 과업 수행내용·방향 및 방법
 - 각 분야별 과업 참여자의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참여자의 보안유지 서약서
 - 사업추진계획(일정)표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자의 제반 규정에 의해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과업범위와 연계하여 과업 수행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비용 증감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 수행에 대한 조사·분석 및 예측은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며, 이를 위해 사용된 기술, 방법, 자료 등은 그 인용 문헌 또는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이 사업의 결과물은 향후 방과후 초등돌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내실있는 연구가 되도록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투입,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이 사업수행 결과 성과에 대한 제반권리는 발주자에 귀속하며, 승인없이 활용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관련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규와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 참여 연구진의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은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여야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인력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변경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관련 용역의 자료제공 지연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과업의 중단,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할 수 있음

○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고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만약 정보 유출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고객정보를 책임 관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FILE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참여 인력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과업수행 중에 알게 된 모든 정보(자료)와 조사결과에 따른 제반권리는 발주자에 속하며 외부(언론기관 등)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 성과품의 소유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② 계약기간 내 용역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 ③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보안에 대한 의무사항

-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이나 발주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추진 상에 잘못이 발견될 때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함

6. 추진일정표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세부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기 간	2주	4주	6주	8주	10주	12주	14주	16주	19주	22주	23주	25주
가. 착수보고회												
나. 현황 및 자료 수집												
다.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라. 중간보고회												
마. 검토·보완작업												
바. 최종보고회 (정책위원회 심의)												
사. 최종성과품 제출												

산 출 내 역 서

○ 용역명 :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구축 방안 기초연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명	1	3,875,676	18.7%	(3,229,730원×2)×10%×1명×6월
		연구원	명	1	3,863,362	18.6%	(2,476,514원×2)×13%×1명×6월
		연구보조원	명	1	2,979,839	14.4%	(1,655,466원×2)×15%×1명×6월
		인건비계			10,718,877	51.7%	
	② 경 비	여비	명	3	1,525,000	7.4%	1호 등급 65,000원×1명×5회 2호 등급 60,000원×2명×10회
		유인물비	식	1	2,290,000	11.0%	설문조사: 50원×6장×2,250부 착수보고서: 50원×40장×25부 중간보고서: 50원×100장×25부 최종보고서: 50원×120장×80부 최종 책자: 50원×120장×80부
		전산처리비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회	2	1,800,000	8.7%	자문회의 150,000원×6인×2회
		임차료					
		교통통신비	월	6	600,000	2.9%	100,000원×6월
		감가상각비					
		경비계			6,215,000	30.0%	
	③ 순 용역원가(①+②)				16,933,877	81.7%	
	④ 일 반 관 리 비 (③의 6%이내)		6%		1,016,033	4.9%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5%		897,495	4.3%	
	⑥ 총 용역원가 (③ + ④ + ⑤)				18,847,405	90.9%	
	⑦ 부 가 가 치 세 (⑥의 10%)		10%		1,884,740	9.1%	
	총 용역비				20,732,000	100%	천단위 이하 절사

「연구용역 과제 자문 의견서」

<과제명>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구축 방안 기초연구
--------------------	-----------------------------

(검토자 : 충남연구원 김용현)

□ 검토의견

연번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①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 애로사항 중 하나이므로 충남형 대안을 도출하는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②	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본 연구는 충청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수의계약이 적절함)
③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본 연구용역의 결과는 초등 돌봄 정책에 활용할 여지가 매우 많음
④	용역비의 적정성	본 연구의 과업지시서상의 설문조사를 포함한 내용적 영역의 방대함으로 미루어볼 때 금20,732천원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됨
⑤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 사항 (최근 5년)	충남도 사례를 가지고 수행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고 사료됨
⑥	산출내역의 적정성	설문조사비의 항목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음
⑦	실무차원의 시행 가능한 용역과제 여부	과업내용에 맞는 현실적인 연구용역비 산정이 필요함
⑧	장기용역사업(1년이상)으로 사업시기 적성함이 낮은 용역 여부	본 연구용역의 과업내용으로 볼 때 1년 이상의 용역사업은 아님
⑨	기타 연구실의 여부	본 연구용역은 육아현장의 절박함을 미루어볼 때 꼭 필요한 연구임

□ 그 외 동 과제 추진을 위한 제반의견

- 충청도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 연구를 도·농으로 대별하여 연구 수행
 - 천안, 아산 등 도시형 지역과 청양, 부여 등 군단위지역과의 편차 반영
- 연구비와 연구기간에 비하여 연구내용이 방만하므로 현실성 있게 과업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6.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연구

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연구
소 관 부 서	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소 요 예 산	금 19,804천원
소 요 기 간	3개월
연구 필요성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구축을 통해 충청남도 의회의 예·결산 심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집행부의 재정정책 평가 등 재정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주 요 연구내용	○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구조 및 개발 방법론 소개 ○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개발 및 지속가능성 검토 ○ 중기 재정전망 모형을 이용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평가 ○ 모형의 한계 및 보완 방향 제시
활용계획	○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의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 예산안 심의 및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평가 등 향후 관련 재정정책 분석에 활용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해 당 없 음
제 안 자	소속 : 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성 명 : 구자열 (서명)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연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예산 : 금 19,804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저성장 고착화,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등 구조적 환경 변화는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
 -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기인한 세수부진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추세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
 - 이에 충청남도 재정의 장기적 위협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유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긴요한 시점
- 경제·사회 환경 및 충청남도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전망결과에 기초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나. 과업의 목적

- 국가재정의 중·장기 위협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4, 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을 중심으로 연구
 - 중기 재정전망은 재정당국이 매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5년 시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타당성·실효성 분석 등에 활용

- 장기 재정전망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지출구조조정 수준, 적정 국가채무 수준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
- 지방재정에 관한 중·장기 재정전망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서울연구원(2017), 충남연구원(2016)에서 시도된 바 있으나 총량적 관점에서 재정전망을 수행하여 모형의 정교화·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은 지방재정을 연구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방법론을 대부분 준용하여 전망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
 - 서울연구원(2017)은 서울시의 총세입·총세출을 전망하고 복지·일자리·SOC 분야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시도했지만, 시계열 모형에 기반하고 있어 재정제도의 미시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
 - 충남연구원(2016)은 충남의 총세입·총세출 및 기초연금 장기 전망을 시도했으나 세목별 추계, 지출항목별 추계를 포함하지 않아 충남의 인구구조 및 재정여건을 충실하게 반영하는데 한계
-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연구원, 충남연구원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충남의 재정여건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의 구축이 필요
 - 구축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바탕으로 충남의 재정여력과 재정건전성을 분석하고, 충남 재정의 현실을 반영하는 장기 지속가능성 검토를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
 -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의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 예산안 심의 및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평가 등 향후 관련 재정정책 분석에 활용
- ⇒ 충청남도 의회가 예·결산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정책 평가 등 재정이슈를 선점하는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됨

3. 과업의 내용

-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구조 및 개발 방법론 소개
-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 세입추계 변수 세출추계 변수
 - 공개되고 있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집계되지 않는 자료에 대한 대용변수 개발
-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개발
 - 항목별 모형 추계방법
 - 지방세 세목별, 세외수입, 이전재원 등 세입추계 방법
 - 의무지출 항목별 추계방법
 - 재량지출 추계방법
 - 항목별 모형설계 및 개발 결과
 - 항목별 모형의 적합성 평가 및 안정성 검증
- 지속가능성 검정
 - 검정결과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검정방법론 제시
- 중 기 재정전망 모형을 이용한『중기지방재정계획』 평가
- 모형의 한계 및 보완 방향 제시

산 출 내 역 서

○ 용역명 :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연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명	1	3,875,676	19.6	(3,229,730원×2)×20%×1명×3개월
		연구원	명	1	4,457,725	22.5	(2,476,514원×2)×30%×1명×3개월
		연구보조원	명	1	4,966,398	25.1	(1,655,466원×2)×50%×1명×3개월
		인건비계	명	3	13,299,799	67.2	
	② 경 비	여비	명	3	740,000	3.7	65,000원×1명×1일×4회 60,000원×2명×1일×4회
		유인물비	원		2,050,000	10.4	착수보고회 : 3,000원×30부 중간보고회 : 5,000원×30부 최종보고회 : 7,000원×30부 보 고 서 : 20,000원×80부
		회의비	원		800,000	4.0	자문회비: 150,000원×2인×2회 회의경비: 20,000원×5인×2회
		경비계	원		3,590,000	18.1	
	③ 순 용역원가(①+②)			원		16,889,799	85.3
④ 일 반 관 리 비 (③ 의 6 % 이 내)			6%		1,013,388	5.1	
⑤ 이 윤 (③ + ④ 의 10 % 이 내)			10%		101,339	0.5	
⑥ 총 용 역 원 가 (③ + ④ + ⑤)					18,004,526	90.9	
⑦ 부 가 가 치 세 (⑥ 의 10 %)			10%		1,800,453	9.1	
총 용 역 비					19,804,979	100	

「연구용역 과제 자문 의견서」

<과제명>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연구
--------------------	-----------------

(검 토 자 : 충남연구원 최웅선)

□ 검토의견

연번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①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계량분석에 의해 도출된 자료는 예·결산 심의의 합리성과 구체성을 제고하고, 도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구수행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됨
②	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이 과제는 지방재정과 계량분석의 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그러한 전문가 또는 이 과제와 유사한 연구이력이 있는 검증된 연구자에게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③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는 예·결산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④	용역비의 적정성	문헌 검토 및 계량분석이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되므로, 책정된 용역비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⑤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 사항 (최근 5년)	중·장기 재정전망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다수 수행된 바 있으므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지난 20년 이내에 실시된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기존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과 다른 모형을 개발한다면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⑥	산출내역의 적정성	적정함
⑦	실무차원의 시행 가능한 용역과제 여부	시행 가능함
⑧	장기용역사업(1년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여부	장기용역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시기의 적합성은 충분함

⑨	기타 연구실익 여부	연구결과는 현실에서는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우선, 지방재정의 특성상 중앙정부 정책, 경제상황, 국제정세 등의 외부변수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변수들을 쉽게 예측할 수 없음. 따라서 과제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실제 예·결산 심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평가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성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여건상 지방자치단체 지출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출추계가 쉽지 않을 수 있음
----------	-------------------	--

